

-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용자
-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5조 (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1992. 10.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0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2년 10월 26일

다. 상 정 일 자 : 제1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2. 10. 27) 상정 및 원안가결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永登浦區廳長)

가. 제안이유

- 재정보조금 확정 內施에 따른 세입 재원 증가
- '92 결산 조정교부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재원 증가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내지 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나. 주요골자

○ 예산규모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77,095,518	75,314,969	1,781,000
일반회계	75,288,451	73,507,451	1,781,000
특별회계	1,807,518	1,807,518	

○ 주요재원

- 의존수입 ————— 1,781,000천원
- ┌ 재정보조금 — 1,078,000천원
- └ 조정교부금 — 703,000천원
- 자체경정재원 ————— 900,000천원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가. 행정재무,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전문위원 : 金熙中)

追更案에 대한 歲入豫算面을 보면, 追更豫算財源은 依存財源인 市補助金 1,078,000천원 및 조정교부금 703,000천원과, 自體更正財源 900,000천원인 총 2,681,000천원으로 依存財源은 우리區民의 直接的인 擔稅額이 아니므로, 歲入財源確保에 따른 問題點은 없다고 봅니다.

먼저 行政財務委員會所管 歲出豫算面을 보면, 첫째, 內務行政費는 既定豫算額 18,810,867천 원에 不足分 722,000천원이 追加計上되었는데, 이는 區民會館 開館에 따른, 관련 經費로 60,000천원, 4個洞 構內食堂 設置費 不足分 24,000천원 洞廳舍敷地買入不足分 補填費로 新吉5洞 廳舍敷地買入費 548,000천원, 堂山1洞 廳舍敷地買入費로 90,000천원이 增額된 것으로, 區民會館開館에 따른 相關경비는 新規 및 不足分으로 구민회관의 效率的 運營管理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 4개동 構內食堂 設置費 不足分에 대하여는, 洞職員의 士氣振作을 위해 補填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思料되며,

[참 고] (단위: 천원)

洞 名	構 造	設計面積	豫 算 額	既定豫算額	增 減	備 考
계		36.6평	48,270	24,000	24,270	
문래1동	조적스라브	16.8	18,105	5,000	13,105	
양평1동	◇	9.6	14,377	6,000	8,377	
신길1동	◇		0	5,000	△5,000	무허가로 설계불가
신길7동	◇	10.3	15,788	8,000	7,788	

○洞廳舍敷地買入不足分 補填費에 있어, 신길5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1,070,000천원이 所要되는데 調整交付金으로 552,000천원이 既確保되어 있으므로 不足分에 대한 補填費로 548,000천원을 追加 計上한 것이며,

○堂山1洞 청사부지 매입건은, 土地所有者와의 買入協議 과정에서 90,000천원이 不足하여 이를 補填하기 위한 것으로 追加計上된 것은 適切하다고 思料됩니다.

둘째, 財務行政費는 既定豫算額 817,442천원에 不足分 65,000천원이 追加計上 되었는데 이는 人口過多洞 (12個洞)의 住民電算網 컴퓨터의 處理容量 不足으로 이를 補強하여 주민등록 업무의 轉산화를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386급DX)구입은 必要하다고 思料됩니다

다.

다음은, 市民保社委員會所管 歲出豫算面을 보면,

福祉事業費中 施設費는 既定豫算額 1,797,350천원 중에서 900,000천원이 更正되고 施設附帶費는 既定豫算額 1,780천원에 不足分 34,000천원이 追加計上된 것으로, 이는 堂山1洞 福祉館敷地買入費로 900,000천원이 本豫算에 計上되었는데 國有地 買入過程에서 財務部の 賣却不可方針으로 買入이 不可能하게 되어 900,000천원을 更正하고, 施設附帶費 34,000천원은 福祉館建築에 필요한 設計 用役費로 영등포1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22,000천원 및 신길2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12,000천원으로 이는 住民宿願事業의 早期發注를 위해 追更豫算에 計上된 것은 適切하다고 思料됩니다.

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兪載漢)

①追加更正豫算案歲入

19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財源은 市補助金 10억 7,800萬원 및 調整交付金 7억 200萬원과 更正財源 9億원으로 總 26億 8,100萬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區의 稅額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9億원만 本豫算에서 事業의 變更으로 因하여 追更으로 更正된 것으로서 追加豫算에 따른 財源은 問題點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追加更正豫算案内譯

都市建設分野 一般會計 19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編成된 18億 8,600萬원의 內譯은 環境綠地分野에 追加更正豫算額 3億원과 建設事業分野 6件中 道路事業費 3件에 12億 6,000萬원과 下水事業費 3件에 3億원이 計上된 것입니다.

③檢討報告

環境綠地分野에 쌌지마당 造成은 高地帶等 文化疏外地域에 文化環境을 結들인 休息空

間을 造成하여 住民들의 여가와 休息을 취하는 場所로 活用하므로 地域住民의 和合과 愛郷心을 갖도록 하는 場所가 될 것으로 우리區는 公園이 부족하므로 이와 유사한 住民 休息空間을 더 많이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삼지마당 조성을 위한 土地 補償費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建設分野로서 永登浦7街 5-142번 지간의 道路開設工事로서 1992년부터 消防 道路開設을 企劃하여 年次的으로 土地 및 建物補償을 推進하였으나 補償이 늦어져 今年度 一次區間의 工事完了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區間內에 土地 4필지와 建物 4棟을 全額補償하여 포장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補償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審査結果：원안 가결

5. 其他事項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동행정지도 시설비의 당산1동 청사부지 매입비가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청사 매입비 잔액을 문래1동 청사증축비로 사용토록 산출기초내역을 변경하자는 이영규위원의 구두동의가 발의되어 구청측 관계공무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

6. 添附：'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부.

'92年度 永登浦區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992. 10. 16.

영등포구청장제출

예 산 총 칙

제1조 (예산총괄)

1.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5,288,451천원으로 한다.
2.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는 별첨 각목명세서와 같다.

제2조 (일시차입금 한도액) 1992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3,764,444천원으로 한다.

제3조 (계속비) 없음.

제4조 (채무부담행위액) 없음.

제5조 (지방채) 없음.

제6조 (예산이용) 다음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1, 2, 3호 제외)

1. 공무원 봉급 (상여금 및 수당, 복리후생비 포함)
2. 공무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부담금
3.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4. 공공요금
5. 제세공과금 및 배상금
6. 차입금의 원리금
7.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7조 (간주처리)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세입예산관별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추경)
장	관	항	목			
합 계				75,288,451	73,507,451	1,781,000
지방세수입				34,336,968	34,336,968	-
	지	방	세	34,336,968	34,336,968	-
세외수입				20,448,765	20,448,765	-
	경상적	세외	수입	8,064,563	8,064,563	-
	임시적	세외	수입	12,384,202	12,384,202	-
보조금				3,862,811	2,784,811	1,078,000
	보	조	금	1,547,712	1,547,712	-
	사	비	보조금	2,315,099	1,237,099	1,078,000
조정교부금				16,639,907	15,936,907	703,000
	조	정	교부금	16,639,907	15,936,907	703,000

세입예산목별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추경)
장	관	항	목			
보조금				3,862,811	2,784,811	1,078,000
	사	비	보조금	2,315,099	1,237,099	1,078,000
		일	반행정비보조	1,745,000	667,000	1,078,000
		일	반행정비보조	1,745,000	667,000	1,078,000
조정교부금				16,639,907	15,936,907	703,000
	조	정	교부금	16,639,907	15,936,907	703,000
		조	정교부금	14,139,000	13,436,000	703,000
		보	통교부금	14,139,000	13,436,000	703,000
합 계				75,288,451	73,507,451	1,781,000

세출예산관별조서

(단위 : 천원)

관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추경)
장	관			
합		75,288,451	73,507,451	1,781,000
10000	의회비	1,228,609	1,228,609	-
11000	선거비	251,221	251,221	-
12000	의회운영비	977,388	977,388	-
20000	일반행정비	35,348,028	34,561,028	787,000
21000	기획행정비	14,932,718	14,932,718	-
22000	내무행정비	19,532,867	18,810,867	722,000
23000	재무행정비	882,443	817,443	65,000
30000	사회복지비	17,622,779	18,188,779	△ 566,000
31000	복지사업비	5,069,159	5,935,159	△ 866,000
32000	보건위생비	1,798,304	1,798,304	-
33000	환경복지비	10,755,316	10,455,316	300,000
40000	산업경제비	47,656	47,656	-
41000	산업경제비	47,656	47,656	-
50000	지역개발비	19,356,411	17,796,411	1,560,000
51000	건설사업비	18,258,305	16,698,305	1,560,000
52000	지수하수사업비	1,098,106	1,098,106	-
70000	지역방위비	183,423	183,423	-
71000	민방위비	183,423	183,423	-
80000	지원제비	652,794	652,794	-
81000	전출금	652,794	652,794	-
90000	예비비	848,751	848,751	-
91000	예비비	848,751	848,751	-

세출예산목별조서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추경)
관	항	세항	목			
내무행정비				19,532,867	18,810,867	722,000
내무행정				7,509,650	7,449,650	60,000
사무관리				7,047,046	6,987,046	60,000
수용비및수수료				98,840	78,190	20,650
자산취득비				73,623	34,273	39,350
동행정지도				12,023,217	11,361,217	662,000
동행정운영				12,023,217	11,361,217	662,000
시설비				1,780,452	1,118,452	662,000
재무행정비				882,443	817,443	65,000
지방수입관리				882,443	817,443	65,000
회계관리				517,837	452,837	65,000
물품구매비				442,038	377,038	65,000
복지사업비				5,069,159	5,935,159	△ 866,000
일반사회복지				3,233,856	4,099,856	△ 866,000
가정복지행정				2,042,576	2,908,576	△ 866,000
시설비				897,350	1,797,350	△ 900,000
시설부대비				35,780	1,780	34,000
환경복지비				10,755,316	10,455,316	300,000
공원복지				2,555,357	2,255,357	300,000
공원관리				1,547,772	1,247,772	300,000
시설비				1,392,000	1,092,000	300,000
건설사업비				18,258,305	16,698,305	1,560,000
건설관리				17,113,593	15,553,593	1,560,000
지역개발				15,416,901	13,856,901	1,560,000
시설비				15,285,879	13,725,879	1,560,000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예산액	비증(-) 교감
관항	세항			
	412 시설비	1,780,452	1,118,452	662,000
23000	재무행정비	882,443	817,443	65,000
23100	지방수입관리	882,443	817,443	65,000
23102	회계관리	517,837	452,837	65,000
	417 물품구매비	442,038	377,038	65,000
31000	복지사업비	5,069,159	5,935,159	△866,000
31100	일반사회복지	3,233,856	4,099,856	△866,000
31102	가정복지행정	2,042,576	2,908,576	△866,000
	412 시설비	897,350	1,797,350	△900,000
	413 시설부대비	35,780	1,780	34,000

일련 번호	전산 번호	산 출 기 초
		662,000,000
		1)동사무소 구내식당 설치비 부족분 보전 24,000,000원 = 24,000,000
		638,000,000
		1)동청사 부지매입비 2)신길 5동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보전) 548,000,000원 = 548,000,000
		2)당산 1동 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보전) 90,000,000원 = 90,000,000
		65,000,000
		1)주민전산망용 컴퓨터 구입 5,000,000원*13대 = 65,000,000
		△900,000,000
		1)당산 1동 복지관 부지매입비 △ 900,000,000원 = △900,000,000
		34,000,000
		1)복지관 시설부대비 2)영등포 1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22,000,000원 = 22,000,000
		2)신길 2동 복지관 건립부대비 12,000,000원 = 12,000,000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기정) 예산액	비중(-) 감소
관항세항	항목			
33000	환경녹지비	10,755,316	10,455,316	300,000
33200	공원녹지	2,555,357	2,255,357	300,000
33201	공원관리	1,547,772	1,247,772	300,000
	412 시설비	1,392,000	1,092,000	300,000
51000	건설사업비	18,258,305	16,698,305	1,560,000
51100	건설관리	17,113,593	15,553,593	1,560,000
51103	지역개발	15,416,901	13,856,901	1,560,000
	412 시설비	15,285,879	13,725,879	1,560,000

일련번호	전산번호	산출기초
		300,000,000
		1)대림 삼지마당 조성 300,000,000원 = 300,000,000
		1,560,000,000
		1,260,000,000
		1)도로 (3건) 2)영등포7가 5-142간 도로개설 (보상) 500,000,000원 = 500,000,000 300,000,000
		2)대신시장-신길동 1212간 도로개설 3)공사비 100,000,000원 = 100,000,000
		3)보상비 200,000,000원 = 200,000,000
		2)신길6동 2772-247간 도로개설 (보상) 460,000,000원 = 460,000,000 300,000,000
		1)하수 (3건) 2)양평1 유수지 준설 120,000,000원 = 120,000,000
		2)도림천 제방보강 130,000,000원 = 130,000,000
		2)도림2동 239주변 하수도공사 50,000,000원 = 50,000,000